구분	대상업무	불변기간	근거법률
민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불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470조제2항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조서 정본송달일부터 2주 이내	민사조정법 제34조
	항소기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상소제기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425조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민사소송법 제427조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 부본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민사소송법 제428조제2항
	제소전화해 불성립시 소제기신청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즉시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444조
	특별항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답변서의 제출	소장부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민사소송법 제226조제1항
	소취하부동의	소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민사소송법 제266조제6항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 (신청 × → 소취하 간주)	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
	재심제기	① 판결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456조
		② 판결확정일부터 5년 이내	
		※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제소	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491조제1항·제2항
		판결선고일부터 3년 이내	민사소송법 제491조제4항
형사	상소제기	판결선고 또는 고지일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 및 제374조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379조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453조
	즉시항고	결정 또는 고지일로부터 3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406조